

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나경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74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28.

발 의 자 : 나경원 · 곽규택 · 박준태
김종양 · 서천호 · 조배숙
인요한 · 추경호 · 고동진
신동욱 · 김성원 · 주진우
송석준 · 강명구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, 소위원회 또는 반은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증인·감정인·참고인(이하 “증인등”이라 한다)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증인등의 출석 요구는 「국회법」 제10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, 국정 운영과 관련된 핵심 증인 채택 요구가 다수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무산되는 등 국회의 진실 규명 기회가 상실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위원회, 소위원회 또는 반이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증인등의 출석 요구 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서 소수당의 실질적인 견제 기

능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0조제1항 및 제4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375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본문 중 “그 의결”을 “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1항 본문”을 “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	제10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
① 위원회,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 또는 받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<u>그 의결로</u>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고, 증인 · 감정인 ·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할 수 있다. <u>다만,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.</u>	① ----- ----- ----- <u>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<단서 삭제></u>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④ <u>제1항</u> 본문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기관은 「국회에서의 증언 · 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고, 위원회의 검증이나 그 밖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.	④ <u>제1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⑤ (생략)	⑤ (현행과 같음)